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지권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16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1월 27일
발 의 자 : 정지권 의원(1명)
찬 성 자 : 김상훈, 김제리, 성중기,
송아량, 이광호, 이승미,
이은주, 이현찬, 최웅식
의원(9명)

1. 제안이유

- 유기 동물로 구조된 길고양이의 안락사 감소를 위하여 개선한다.

2. 주요내용

- 가. 중성화 길고양이 방사 장소 다변화 가능케함(제21조제2항)
- 나. 공고기간이 지나 포획한 길고양이 중성화 가능케함(제21조제3항)
- 다. 서울시 생활공원 중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비용 지원 가능케 함(제21조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제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11조에 따른 공고 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고, 급식소의 관리와 운영은 동물보호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1011100000016
------	------------------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정지권 의원 접수일 : 2021.01.11 회신일 : 2021.01.22	담당 : 조도형 과장 여차민 팀장 채소영 예산분석관 내용문의 : 02-2180-7942
--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함에 따라,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중성화 비용과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비용 등 발생할 수 있으나 서울시 전역 또는 해당 대상지의 길고양이 서식현황을 구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가.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